

시 민

담당자	안전보건팀장	안전지원과장
		07/15
협 조		

문서번호	안전지원과-28439
결재일자	2022. 7. 15.
공개여부	부분공개(7)
방침번호	

2022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계획



2022. 7.

소방재난본부
[안전지원과]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' ■ 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정책의제 형 성	◆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? - 현황자료(통계자, 빅데이터 등)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	◆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- (시민참여) 청책토론회, 시민공모, 설문조사 등 - (전문가 자문) 자문위원회, TF운영, 타당성 검토조사, 젠더자문관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정책수립	◆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(근거법령 및 규칙, 지침 등)는 검토하였습니까? - (선거법)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- (성별분리통계) 성별분리통계 생산·제시·분석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	◆ 정책(사업) 집행의 직·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? - (갈등)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- (사회적 약자)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- (일자리) 일자리 창출, 직·간접 채용, 전문인력 양성, 창업지원 - (안전)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, 안전 관리 등 - (온실가스 감축)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,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정책집행	◆ 타기관,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·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타기관) 타기관(중앙정부, 지자체), 민간(단체) 등의 자원 활용 방안 - (자치구 영향)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	◆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지속가능성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보전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정책홍보	◆ 국내외 정책(사업)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홍보) 국내보도자료, 기자설명회, 현장설명회 - (정책영문화) 영문제목요약, 해외언론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- (성평등) 성별고정관념·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기타사항	◆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 을 사용하였습니까?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	◆ 공개 여부를 " 비공개 "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 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)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
2022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계획

의료비 부담 과중, 재난 및 사고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직원에게 격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직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

I 사업 개요

추진근거

- 국가공무원법 제52조(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)
-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

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할 수 있다.

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이하 소방공무원으로서

- 본인·가족 의료비 부담과중(2년간 5백만원 이상)으로 생활이 어려운 직원
- 최근 2년간 화재·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직원
- 그 외 사유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직원

지원내용 : 격려금(최대 500만원)

소요예산 : 금100,000천원

II 지원 기준
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소방공무원

- ※ 기준중위소득 :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값
- ※ 기준중위소득 이상이더라도 의료비 부담과 재난 피해 비용이 상당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

<2022년도 기준중위소득(보건복지부)>

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기준중위소득 (단위:원)	1,944,812	3,260,085	4,194,701	5,121,080	6,024,515	6,907,004	7,780,592

※ 8인 이상 가구 : 1인당 873,588원씩 증가(8인가구 : 8,654,180원)

○ **최근 2년간('20.7.1.~'22.6.30.) 본인·가족 의료비 실 본인부담금이 5백만원 이상**

- 본인, 배우자, 자녀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의료비 지출액 합산
- 의료비 제외항목
 - ① 요양원(노인복지시설로 의료기관이 아님)
 - ② 보철, 임플란트, 틀니 등 치과 비용
 - ③ 질병 또는 사고와 관계없는 미용 치료비(성형, 교정, 양악수술 등)
 - ④ 시력개선을 위한 라식, 라섹 등 시술비
 - ⑤ 난임치료비(중복 지원)

○ **최근 2년('20.7.1.~'22.6.30.) 화재,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여 생활이 어려운 직원**

- 본인 소유 주택만 인정(가족 소유의 주택 및 상가 등 제외)

○ **그 외 사유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직원**

- 가구소득, 재산상황, 부양가족 등 생활실태와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및 자료제출

III 지원 내용

지원금액 : 격려금 최대 500만원

○ **본인 실부담 의료비 신청시 부담액의 30~50% 내외 지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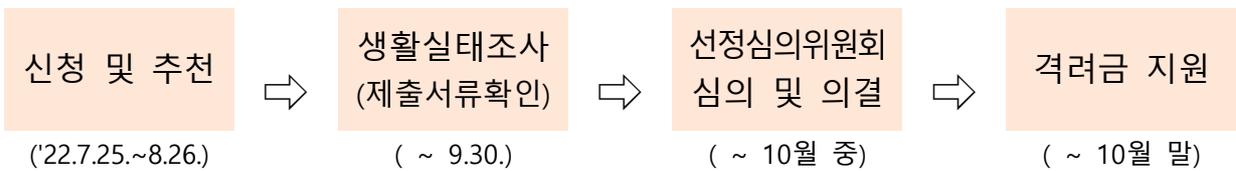
의료비 부담원	본인	배우자, 자녀	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
지급비율	50%	40%	30%

- 화재,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여 생활이 어려운 직원 피해액 규모를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

지원방법 : 지원 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입금

IV 지원대상 선정

선정절차



- 지원여부 및 금액은 지원기준을 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·조정 후 최종확정

실태조사

○ 제출서류 확인

- 전년도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자격 확인

○ 비위조사 여부(감사담당관)

○ 부동산소유여부(토지관리과)

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·의결

○ 위원구성 : 소방령 이상 7명

※ 위원장 : 안전지원과장 / 간사 : 안전보건팀장

○ 심의내용 : 생활실태조사 등 검토 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심의·의결

○ 심사 및 선정기준(안)

- 인적순위 : 본인 → 배우자 및 자녀 →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
- 물적순위 : 재산이 적은 자 우선(재산현황 확인)
- 사안별 순위 : 재난 및 사고 → 질병 → 기타
- 비용순위 : 재난, 사고, 질병 등 비용부담이 많은 자 우선

V**신청 방법** 신청서 및 증빙서류 안전지원과 직접 제출

- 개별 신청 또는 기관별 대상자 추천(추천자 : 각 부서장)
- 투병 중인 직원에게도 개별 안내 후 소속 기관에서 신청서 작성
- 소방재난본부 별도 정원인 경우 직전 기관에서 신청서 작성

 신청시 유의사항

- 유사제도 및 타 수혜자 중복 불가
 - 기 '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' 지원금 대상자
 - 공사상자 자녀 장학금 수혜자
 - 난임치료비 지원 및 119안심협력병원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
- 징계 대상자 제외
 -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 (승진임용의 제한) 제1항 제2호의 승진 제한 기간에 있는자
 - 3대 비위(성, 금품, 음주운전) 혐의자, 비위 조사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자

VI**향 후 일 정**

- 신청 및 추천 접수 : '22.7.25.~ 8.26.
- 생활실태조사 및 확인 : ~ '22.9.30.
-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: ~ '22. 10월 중
- 격려금 지원 : ~ '22. 10월 말

붙임 : 증빙서류 목록 및 신청서식. 끝.